

1. 개정 이유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에 채납자의 가상자산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이에 필요한 제출서식을 신설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과다환급한 금액을 징수할 때 더하는 가산금의 이율을 하향 조정하고, 여행자 휴대품 중 면세되는 주류의 기존 기준에서 병수 기준(2병)을 삭제하며,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환급금 또는 과다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이율의 하향 조정(안 제9조의3)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과다하게 환급한 금액을 징수할 때 더하는 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31로 하향 조정함.

나.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기관 추가(안 제37조제2항제34호 신설)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기관에 해외식품 등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식품안전정보원을 추가함.

다.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 병수기준(2병) 폐지(안 제48조제3항)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기준인 병수 2병을 폐지하여 용량 2리터 이하 및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되도록 개정함.

라.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율 인하(안 제68조의2제1항)

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율을 현행대비 100분의 50으로 인하함.

마. 원산지증명서 발급 운영 사항 규정(안 제77조의2 신설)

법 제232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요청 기간 규정을 신설함.

바. 채납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에 관한 과세자료 서식 신설(별지 제76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2. 27. ~ 3.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중 “35”를 “31”로 한다.

제37조제2항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식품위생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위해 수입하는 해외식품등으로 한정한다)

제48조제3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면세한도		비고
술	용량 2리터(L)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		
담배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mL)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그램
향수	100밀리리터		

제50조제1항제2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반도체”를 “반도체 제조설비 또는 디스플레이”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제조설비 운반용”을 “제조설비 또는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의 운반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반도

체”를 “반도체 제조설비 또는 디스플레이”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보세사 징계 등) ① 세관장은 보세사의 직무 위반 또는 의무 불이행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의 또는 경고의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법 제165조제5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받았거나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자가 그 처분 또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65조제5항제3호에 따른 직무를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세관장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세사 징계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68조의2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연도 매출액	특허수수료율
2천억원 이하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5
2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억원+(2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25)
1조원 초과	21억원+(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6까지를 각각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7까지로 하고,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등) ①법 제232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란 「대외무역법 시

부 칙

행령」 제91조제4항 단서 및 제10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232조의2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은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지 못한 자는 수출물품 선적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9조의4제1항제37호 중 “부동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정한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부동산 거래의 신고”로 하고, 같은 항에 제6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8. 영 별표 3 제70호에 따른 가상자산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 별지 제76호서식

제81조의 제목 “(개청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외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를 “(업무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외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개청시간외”를 “업무시간외”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48조 본문에 따른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본문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과다환급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부터 적용한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자료

(단위: 원, m²)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7 -

(앞 쪽)

가상자산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

1. 제출자			①제출시기	년 월 일
②가상자산사업자명 (제출의무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실명계좌발급 금융기관		
⑤주소	⑥계좌번호	⑦기촉가상자산 가액 적용 가상자산사업자 코드		

2. 가상자산거래내역

[illegible]

「관세법 시행령」 별표 3 제70호에 따라 위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관세청장 귀하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297mm×210mm(백상지 80g/m²)

작성 방법

- ①란에는 「관세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3호 바목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시기(매년 4월 30일, 10월 31일)를 적습니다.(예: 2025년 4월 30일, 2025년 10월 31일)
- ②란부터 ⑥란까지는 「관세법」 시행령 별표 3 제70호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 ④금융기관코드는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금융기관코드를 아래 표1을 참조하여 기재하고, 가상자산 간 교환거래만 가능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축 가상자산의 가격 결정을 위해 선택하는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코드를 ⑦기축 가상자산 가격 적용 가상자산사업자 코드 란에 아래 표2를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표1> 실명계좌 발급 금융기관코드				
금융기관	국민	신한	케이뱅크	기타
코드	01	02	03	99

<표2> 기축 가상자산 가격 적용 가상자산사업자 코드					
가상자산사업자명	두나무	빗썸	코빗	코인원	스트리미
코드	001	002	003	004	005

- ⑥거래자 : 채납자의 인적사항, 계정관리코드(예시: 동일인의 계정이 2개인 경우 '001', '002'), 금융기관코드(위 표 참조), 계좌번호 및 지급주소를 적습니다.
 - ⑧가상자산 종류 : 홀텍스-조회/발급-기타조회-"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코드 조회" 참조 (예시: '비트코인'의 경우 '000145', 표 안에 없는 경우 '999999')
 - ⑩거래 전 잔고 : 매매, 교환, 대여, 이전, 인입 등의 거래가 발생하기 전의 가상자산 종류별 잔고를 적습니다.
 - ⑪거래일자 :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연도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를 적습니다.(예시: 2027년 3월 1일 → 20270301)
 - ⑫거래유형 : 가상자산을 매도한 경우 '**매도**', 가상자산을 매수한 경우 '**매수**', 교환으로 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 '**교환양도**', 교환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교환취득**', 가상자산 대여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대여**', 다른 지급주소로 이전하여 인출되는 경우 '**이전**', 외부에서 가상자산이 예입된 경우 '**인입**', 기타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기타**'로 구분하며, 아래 표를 참조하여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 거래유형별 ⑬양도 등, ⑭취득 등, ⑮거래상대방은 아래 작성방법 참조[거래유형별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금액을 원단위까지 적습니다.]

코드	유형	거래유형	⑬양도 등	⑭취득 등	⑮거래상대방
01	매도	가상자산 매도(가상자산A→원화)	가상자산A의 매도가액과 매도 당시 수수료를 적습니다	빈칸	빈칸
02	매수	가상자산 매수(원화→가상자산A)	빈칸	가상자산A의 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수수료를 적습니다	빈칸
03	교환양도	가상자산 교환(가상자산A→가상자산B)	가상자산A의 교환가액과 교환 당시 수수료를 적습니다	빈칸	빈칸
04	교환취득	가상자산 교환(가상자산A→가상자산B)	빈칸	가상자산B의 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수수료를 적습니다	빈칸
05	대여	가상자산 대여에 대한 대가 수령 (대여 예시: 예치서비스 등)	가상자산 대여로 인하여 수령한 대가와 발생하는 수수료를 적습니다	빈칸	대여소득 지급자의 인적사항과 가상자산주소(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
06	이전	다른 가상자산주소(지갑주소)로 이전	빈칸	이전 시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과 수수료를 적습니다	가상자산 수취인의 인적사항과 가상자산주소(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
07	인입	외부에서 가상자산 예입	빈칸	인입된 가상자산의 당초 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수수료를 적습니다	가상자산 송신인의 인적사항과 인출된 가상자산주소(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
99	기타	기타 가상자산 취득 (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랍 등)	빈칸	가상자산 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수수료를 적습니다	지급자의 인적사항과 가상자산주소(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

- ⑬거래수량 : 거래유형별 해당 가상자산의 최소 거래단위 까지 적습니다.(예시 : 비트코인 1BTC → 1.0000000000)
- ⑭단가 : 매도, 매수, 교환양도, 교환취득, 대여, 기타 취득 시 거래시점의 단가를 최소 거래단위까지 적습니다.
- ⑬양도 등 : 거래유형이 매도, 교환양도, 대여의 경우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⑭취득 등 : 거래유형이 매수, 교환취득, 이전, 인입, 기타의 경우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 거래자수정여부 : 거래자가 장외(개인간거래, 해외거래소 등)에서 취득한 가상자산을 인입하여 취득가액을 직접 입력한 경우 Y, 그 외에는 N을 적습니다.
- ⑮거래상대방 :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으며, 대여, 이전, 인입, 기타의 경우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가상자산주소(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
- 지갑 소재지는 가상자산사업자 코드를 기재합니다.(홀텍스-조회/발급-기타조회-"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코드 조회" 참조)
- ⑯거래 후 잔고 : 매매, 교환, 대여, 이전, 인입 등 거래가 발생한 후의 가상자산 종류별 잔고(수량)를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5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천분의 3을 말한다.	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 ----- ----- 31----- --.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① (생략) ②법 제90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3. (생략) <신설>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3. (현행과 같음) 34. 「식품위생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위해 수입하는 해외식품등으로 한정한다)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①·② (생략)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담	③-----

배·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이하 이 항에서 “별도면세범위”라 한다)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담배·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구분	면세한도		비고
술	2병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L)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
담배	결련	200개비	2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
	엽결련	50개비	
	결련형	200개비	
	전자담배	20밀리리터(mL)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그램	
향수	100밀리리터		

④·⑤ 삭제
 ⑥ (생략)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법 제97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3. (생략)
 24.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구분	면세한도		비고
술	용량 2리터(L)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		
담배	결련	200개비	2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
	엽결련	50개비	
	결련형	200개비	
	전자담배	20밀리리터(mL)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그램	
향수	100밀리리터		

⑥ (현행과 같음)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

 1. ~ 23. (현행과 같음)
 24. 반도체 제조설비 또는 디스플레이 -----

 --

가. 반도체 제조설비 운반용 카트	가. ---- 제조설비 또는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의 운반용 ----
나. 반도체 제조설비의 운송 과정에서 해당 설비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기록하기 위해 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기기	나. 반도체 제조설비 또는 디스플레이 -----
② (생략) <신설>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의2(보세사 징계 등) ① 세관장은 보세사의 직무 위반 또는 의무 불이행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의 또는 경고의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법 제165조제5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받았거나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자가 그 처분 또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65조제5항제3호에 따른 직무를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세관장은

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① 법 제176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라 한다)는 제6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2조의7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① -----																
<table border="1"> <thead> <tr> <th>해당 연도 매출액</th><th>특허수수료율</th></tr> </thead> <tbody> <tr> <td>2천억원 이하</td><td>해당 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1</td></tr> <tr> <td>2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td><td>2억원+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td></tr> <tr> <td>1조원 초과</td><td>42억원+(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td></tr> </tbody> </table>	해당 연도 매출액	특허수수료율	2천억원 이하	해당 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1	2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2억원+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	1조원 초과	42억원+(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	<table border="1"> <thead> <tr> <th>해당 연도 매출액</th><th>특허수수료율</th></tr> </thead> <tbody> <tr> <td>2천억원 이하</td><td>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5</td></tr> <tr> <td>2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td><td>1억원+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25)</td></tr> <tr> <td>1조원 초과</td><td>21억원+(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td></tr> </tbody> </table>	해당 연도 매출액	특허수수료율	2천억원 이하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5	2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억원+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25)	1조원 초과	21억원+(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
해당 연도 매출액	특허수수료율																
2천억원 이하	해당 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1																
2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2억원+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																
1조원 초과	42억원+(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																
해당 연도 매출액	특허수수료율																
2천억원 이하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5																
2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억원+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25)																
1조원 초과	21억원+(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7조의2(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등) ①법 제232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4항 단서 및 제10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232조의2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은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지 못한 자는 수출물품 선적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의2 ~ 제77조의6 (생 략)

제77조의3 ~ 제77조의7 (현행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6까지와 같음)

제79조의4(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법 제264조의2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영 제263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 36. (생 략)

37. 영 별표 3 제37호에 따른 분동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정한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한 자료: 별지 제38호서식

38. ~ 67.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81조(개청시간 및 물품취급시간 외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

제79조의4(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

1. ~ 36. (현행과 같음)

37. ----- 분동산 거래의 신고-----

38. ~ 67. (현행과 같음)

68. 영 별표 3 제70호에 따른 가상자산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 별지 제76호서식

② (현행과 같음)

제81조(업무시간 및 물품취급시간 외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

①법 제3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u>개청시간</u> 외 통관절차·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 (구호용 물품의 경우 당해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기본수수료 4천원(휴일은 1만2천원)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출물품의 통관절차 또는 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는 수입물품의 통관절차 또는 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 3. (생략) ② ~ ⑥ (생략)	① ----- ----- <u>업무시간</u> <u>외</u> ----- -----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